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6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‘위원회 정비 추진계획’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(안 제3조)

-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

나. 위원임기(안 제5조)

-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 임기 조항 삭제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위원회 정비 기준(※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)

【 위원회 정비 기준 】

1. 폐지 :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
2. 통폐합 :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
3. 협의체 전환 :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내부 협의체로 전환
4. 비상설화 :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,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종료 시 해산
5. 존속기한 설정 :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(5년 이내)

나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
(2)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4. 9. 24. ~ 10. 14.) 결과 : 의견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이하로”를 “이하의 위원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이라도”를 “중이라도”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첫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,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”를 “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<u>이하</u>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<u>이하의 위원으로</u>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.</u></p>
<p>제4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<u>전이라도</u>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<u>중이라도</u> -----.</p>
<p>제5조(임기) ①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위원 중 결원 발생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
<p>제7조(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)</p> <p>① <u>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</u></p>	<p>제7조(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)</p> <p>① <u>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첫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, 이후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, <u>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<u>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</u>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.</p>	<p><삭제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3조(위원회 관리 및 정비)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 관리하고,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중에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해당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관리하면서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여부 등의 사항을 파악한 경우, 해당 담당부서장에게 그 위원을 재위촉하지 않는 등 위원회를 자체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